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5
----------	------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1일
발 의 자 :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 최호정, 박마루, 김현기, 김제리,
강구덕, 한명희, 김동욱, 양준욱,
조규영, 최영수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기존 도심의 범위를 한양도성 지역으로 확장하여 역사도심으로 계획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4대문(승례문, 흥인지문, 돈의문, 숙정문)이 한양도성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한양도성을 기준으로 역사도심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 기존 4대문안의 범위 확장 및 명칭 변경 (안 제54조, 제55조, 제68조의2)
- 기존 4대문안의 범위확장에 따른 상업지역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종전 규정에 따름 (부 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 중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4대문안(이하 “4대문안”이라 한다)”을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복재개발방식”을 “소단위 정비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 중 “4대문안”을 “역사도심”으로 한다.

제55조제13항 중 “4대문내”를 “역사도심내”으로 하고, 제17항 중 “4대문안”을 “역사도심”으로 한다.

제68조의2 제4호 “4대문안”을 “역사도심”으로 한다.

[별표 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제55조제3항 관련) 제2호 “4대문안”을 “역사도심”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경과조치)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역사도심 중 종전 조례에 의한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은 제55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경과조치)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역사도심 중 종전 조례에 의한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3호를 적용한다.

-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단, 4대문안 : 600퍼센트)
-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단, 4대문안 : 500퍼센트)
-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단, 4대문안 : 500퍼센트)

② ~ ⑫ (생략)

⑬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대문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⑭ ~ ⑯ (생략)

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4대문안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단, 역사도심 : 600퍼센트)
-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단, 역사도심 : 500퍼센트)
-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단, 역사도심 : 500퍼센트)

② ~ ⑫ (현행과 같음)

⑬ ----- 역사도심내 -----

⑭ ~ ⑯ (현행과 같음)

⑰ ----- 역사도심 -----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4. 제54조제5항에 따른 ‘4대문안’

[별표 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제55조제3항 관련)

2. 제1호 이외 ‘4대문안’의 용적률

4. 제54조제5항에 따른 ‘역사도심’

[별표 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제55조제3항 관련)

2. 제1호 이외 ‘역사도심’의 용적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역사도심 중 종전 조례에 의한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은 제55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경과조치)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역사도심 중 종

전 조례에 의한 4대문안 이외의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할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별표3의 3호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4조의 “수복재개발방식”을 “소단위 정비형”으로, 제55조의 “4대문안”을 “역사도심”으로 용어 및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직접 발생 비용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없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분석관	한기백

☎02-3705-1284, e-mail(hophan@seoul.go.kr)